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 - 220호

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에 의거 흑석2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09.11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2009.03.04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하고, 같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3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■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일 : 2021.09.13.

다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: 2021.09.14.

동
작
구
보

제
1
7
3
7
호

동
작
구

www.dongjak.go.kr

